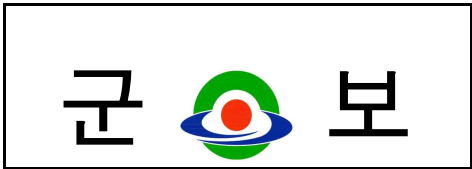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10호 2024. 2. 26.(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하천점용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4-30호)

공 고

○2024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2차)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24-428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한천(지방하천)
점 용 자 주 소	예천군 체육사업소장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위 치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295-3번지 외 1필지
점용면적 (허가량)	24㎡
점용목적	공작물(이동식 창고)의 설치
사업개요	한천 파크골프장 이동식 창고 설치
점용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8년 12월 31일

예천군 공고 제2024-428호

2024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2차공고)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이웃 간 상생하는
건실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예 천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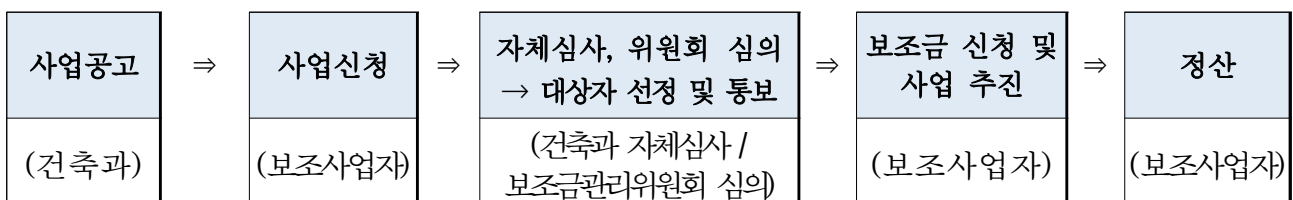
2024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I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2
- 지원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희망단지
- 예산총액 : 50,000천원
 - 가. 최초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나. 2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다. 3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30%이상 자부담
 - 라. 4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
 ※ 2023년도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자부담 비율 10% 경감
- 사업내용 : 단지 별 희망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유형	프로그램 예시
소통 / 주민화합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⑤ 아파트 신문 발간
친환경 실천/체험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텃밭 가꾸기 ③ 녹색장터 ④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공유 ⑤ 체험활동
교육 / 보육	① 취미교실 ② 반찬품앗이, 이유식 만들기 ③ 자녀교육 ④ 보육 / 공동육아
문화 강좌	① 운동, 건강교실(GX, 헬스, 요가) ② 어학교실(영어, 한문) ③ 음악교실 ④ 교양강좌
기타 활동	① 이웃돕기 ② 봉사활동 ③ 재능기부 ④ 입주민과의 소통의장 운영
혼 합	2개 이상의 프로그램 혼합

5. 추진절차



※ 정산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최우수 단지를 선정하여 차년도 자부담 비율 10%경감
(평가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참고)

II 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3. 3. 15.(금) 17:00 마감
2. 신청방법 : e-mail(seowon4959@korea.kr) 또는 방문 · 우편접수
※ 마감일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 유효(서류 일체 구비)
3. 접수장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50-6947)
4. 신청서류
 - 가.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나.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다. 사업계획서 1부.
 - 라.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 1부.
 - 마. 입주자대표회의록 1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 수리 및 자부담 방안에 대한 의결 내용 포함
5. 참고자료
 -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기준 1부.
 - 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표 1부.

III 사업 선정

1. 선정 절차
 - 가. 1차 심사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건축과 자체 검토
 - 나. 2차 심사 : 보조사업 선정 심사기준에 따른 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 결과 발표 : 선정단지 개별통지(2024. 4월 예정)

IV 유의사항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됨
 - 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다.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단지 당 단일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사업 응모를 원칙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

공모사업명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 업 개 요	신청단지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 업 비	내 역	총 계		보조금	자부담	
		천 원(100%)		천 원(%)	천 원(%)	
연 락 처	성 명 (실무담당자)			주 소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AX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활성화단체장 :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1부. 3. 입주자대표회의록 1부.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개 인(단 체)명				회원수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 업 내 용	분 야					
	신 청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장 소	
	총소요사업비				지원신청액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나. 사 업 량 :

다. 지원근거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2

라. 주요내용 :

4. 기대효과 :

5.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별지 제7호 서식]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바람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변경)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동, 호수	핸드폰			
	구성 내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 지원	사업 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지원,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자택	
	동, 호수			핸드폰	
신청 내용	신청 사업비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지원된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첨		- 세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 의결서(사업비 지원 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표

신청 단지				사 업 명			
-------	--	--	--	-------	--	--	--

심사 항목	배 점	내 용	상세 배점	평가 점수		
총 계	100					
취지 적합성	25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사업 여부 -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 가능한 양질의 사업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실행 가능성	25	- 응모 프로그램 및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구체화 및 명확화 여부 - 책정 예산의 타당성 및 현실성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주민 참여성	25	- 입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업 여부 - 특정 연령층에 편중된 사업 지양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사업 지속성	25	- 일회성,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여부 - 장기적 및 지속적 규모로 확대 가능한 사업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종합 의견						
지원 금액	신 청 액(천원)			부서 검토액(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기준

보조비목	편성 기준
- 홍보비 - 인쇄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실비정산 - 예시: 홍보물, 홍보용품, 현수막, 기념물
- 물품구입비 - 사무용품구입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실비정산 ※ 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예시: 컴퓨터, TV 등)
- 단기임차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임차 비용 - 실비정산
- 시외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가능 - 실비 정산 - 예시: 유류비, 주차비, 통행요금, 교통비 - 숙박비: 1인 1박 5만원 기준으로 편성
- 식비 - 간담회비	-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편성 - 다과비: 1인 4천원 이내 편성 ※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다과비 또는 주류 구매로는 편성 불가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 증액 가능
- 외래 강사료	- 지급단가: [별지 제8호 서식]참고 - 1인당 1일 최대 3시간만 인정(기본시간 1시간 + 초과시간 2시간)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월간 지급 강사료가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후 지급
- 공연비	-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이하: 6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월간 개인에게 지급 되는 금액이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후 지급 ※ 공연기획사와 거래시 부가세가 포함된 지급한도금액임
- 시설공사비	- 실비정산 - 예시: 공간 조성, 공연 무대 설치 ※ 행위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것에 한함
- 체험비	- 실비정산 - 예시: 현장학습 입장료

☐ 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천군 관내 사용 원칙

※ 불가피한 경우: 금액의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거나, 관내에서 해당 품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세부 증빙서류는 보조금 교부시 별도 안내

☐ 보조 비목에 없는 항목에 대한 지출의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054-650-6947)

강사료 예산 편성 기준

비 목	등 급	대 상(전·현직)		지급한도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강사비	특급 (전·현직)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차관급) - 국회의원 - 기초자치단체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전직 공기업 대표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경상북도 사전협의)	300,000	200,000 (매시간)	
	1급 (전·현직)	- 대학의 교수 - 판·검사 - 지방의회의원 - 언론인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유명 예술인, 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250,000	120,000 (매시간)	
	2급 (전·현직)	-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50,000	80,000 (매시간)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	100,000	50,000 (매시간)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0,000	40,000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해당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의 1년 이상 경력자		60,000	30,000 (매시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우수단지 선정 평가표

단 지 명			진행 사업명		
심사 항목	배 점	내 용		상세 배점	평가 점수
총 계	100				
주민 참여성	25	· 입주자등의 참여도		높음: 25 보통: 15 낮음: 5	
지역 활성화	25	· 예천군 관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출 비율		60% 이상 : 25 50 ~ 59% : 20 40 ~ 49% : 10 30 ~ 39% : 5 29% 이하 : 0	
보조사업 관리	30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여부		우수 : 30 보통 : 15 미흡: : 0	
입주자 대표회의 이수율	10	·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 기준		80 ~ 100% : 10 70 ~ 79% : 8 60 ~ 69% : 4 51 ~ 59% : 2 50% 이하 : 0	
단지 내 민원 여부	10	·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련 민원제기 여부		2024년 발생민원을 대상으로 배점	
사업 진행 민원제기	-30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 및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여부		최대 -30	